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66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	---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3
--	---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한병도의원안)	12
------------------------------------	----

I. 개요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6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4.
- (3) 회 부 일 : 2024. 9.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

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 (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조의6)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u>공제사업</u>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u>5년</u> 이상 납입한 근로자 ○ 감면내용: 기업의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별 감면 -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90% 중견기업 근로자: 50% - (그 외)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 <u>2024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등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u>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u>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u>3년</u> 이상 납입한 근로자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김주영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u> - <u>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u>

* 임태영의원안 2024. 8. 1. 제출(의안번호 249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한병도의원안 2024. 9. 4. 제출(의안번호, 3661), 김주영의원안 2024. 10. 24. 제

출(의안번호 486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6건의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②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③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의 경우 공제납입금의 최소 납입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면서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¹⁾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²⁾의 유형 중 하나로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복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중 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현행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5년 세법 개정²⁾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통상 ‘내일채움공제’라 불리움)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되고, 수령한 공제금 중 근로자가 납부했던 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제외한 부분은 14%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³⁾,

기업의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⁴⁾ 기존의 월급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6%~45%)되어 때로는 당초 적립금액보다 실수령이 작게 되는 등 당초의 공제금 지급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임.

동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직자 중 해당 기업의 대표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하 “핵심인력”)이 해당 중소기업·중견기업과 공동으로 1:2 이상⁵⁾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한 후,

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출처: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2023. 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4)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5)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공제금과 이자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청년과 기업, 정부가 최소 월 12만원 : 월20만원 : 월30만원의 비율로 5년간(정부는 3년간) 공제금을 적립한 후 그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액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가 추가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운영되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유형]

구분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대상	근로자	핵심인력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지정한 인력	청년(만15세~34세)	
가입기간		5년	5년	3년
납입비율		1 : 2 이상 (근로자:기업)	월12만원 : 월20만원 : 정액 7회 (근로자:기업:정부)	월16.7만원 : 월16.7만원 : 정액 6회 (근로자:기업:정부)
적립금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운영기간		2014년 8월~	2018~2022년	2023년(한시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2023년도 감면세액은 38억원이며, 2025년 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6)]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망)	2025 (전 망)
조세지출	-	8	29	31	38	157	170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6) 동 특례의 경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공제금 수령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지출도 없었음.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6건의 개정안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6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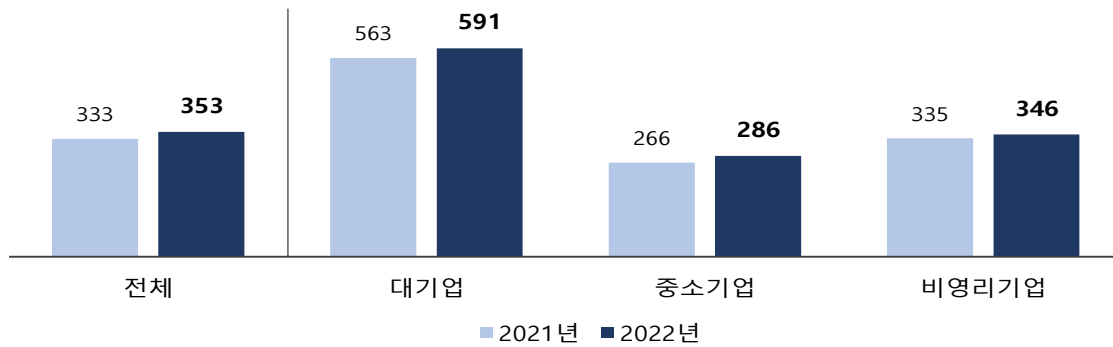
첫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의 지원을 연장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소득은 대기업 597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중소기업 7.2%로 대기업 4.9%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⁷⁾.

7)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통계청). 2024. 2.27.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단위: 만 원)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업원 수 1~4인 기업의 경우 2,471천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6,071천원으로, 종업원 수 1~4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간 1인당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3,600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2,763천원과 비교시 증가한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 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 천 원)

구분	1~4인 (A)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B)	차이 (B-A)
2013년	1,684	2,219	2,625	3,007	3,381	4,447	2,763
2023년	2,471	3,241	3,728	4,073	4,610	6,071	3,6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 8

둘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 공제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1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8.0개월) 대비 2.9배 오래 재직하였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8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9.2개월) 대비 2.74배 오래 재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평균재직기간]

(단위: 개월)

청년재직자					핵심인력				
공제가입자			미가 입자 (B)	장기 재직 효과 (A/B)	공제가입자			미가 입자 (B)	장기 재직 효과 (A/B)
전체 (A)	유지	해지			전체 (A)	유지	해지		
52.1	55.4	42.6	18.0	29.0	52.8	56.6	47.4	19.2	2.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으로의 취업유도 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⁹⁾,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의 연차별 해지율을 살펴보면 가입 초반인 1년차(12.1%) 및 2년차(11.5%)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한병도의원안)

현행	개정안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7) ☐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 공제액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7) ☐ (현행과 같음)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중견</th><th>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h>(3년 지원)</th><th>(2년 지원)</th></tr><tr><td>상시근로자</td><td>700</td><td>77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td>1,100</td><td>1,20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한병도의원안 2024. 9. 4. 발의(의안번호 3661)

☐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당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과거에는 고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고용지원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고용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17년 세법개정 시 종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법 제29조의7)가 신설되었음.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인원당 450~7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그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인원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동 제도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적용됨.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세법개정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이 각각 100만원씩 인상되었으며, 공제기간은 대기업이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확대되었음.

그런데 2022년에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가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도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었으며, 중복지원의 배제를 위해 2024년까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¹⁰⁾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
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개정안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여 고용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에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인해 제도의 세제유인과 일관되게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본의 구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서 뚜렷한 고용증대효과가 관찰되며,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2023년 기준 실업률은 2.7%로 2019년 대비 1.1%p 감소했고, 고용률은 69.2%로 2019년 대비 2.4%p 증가하여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업률	3.8	4.0	3.7	2.9	2.7
청년 실업률	8.9	9.0	7.8	6.4	5.9
고용률	66.8	65.9	66.5	68.5	6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은 기업에게 고용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를 단순화하고자 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에 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 9.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모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당 세액공제를 부여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이 더 큰 수준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동일함.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 1인이 증가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으면 700만원을 공제받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으면 850만원을 공제받음.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이 증가해도 별도의 우대공제가 없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 하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우대공제가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늘어남.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되어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음.¹²⁾

문 의 처
02)6788-5155

12) 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말에 적용기한이 도래하여 종료될 예정임.